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6.

발 의 자 : 문금주 · 박해철 · 김성범
김승원 · 황정아 · 이개호
김기표 · 이정문 · 어기구
권향엽 · 서삼석 · 윤준병
장종태 · 임문영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,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, 양식수산물의 포획·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1조, 제52조 및 제79조).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전단 중 “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”를 “사용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”을 “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선을”로, “자가 제1항에 따라”를 “자가 제2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”를 “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사용하는 양식업권자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장(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을 말한다) 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본문 중 “제3항까지에”를 “제4항까지에”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·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면 면

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제52조 전단 중 “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41조제1항 ·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한다.

제79조제5호 중 “제41조제1항”을 “제41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제41조제4항”을 “제41조제5항”으로, “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”를 “해당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 · 금지)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 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(이하 “관리선”이라 한다)을 <u>사용하려 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</u>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 권자(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. <u><신 설></u>	제41조(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 ·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용</u> <u>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권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·채 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어선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관 리선으로 사용하려면 면허권자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 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<u>자가 제1항에 따라</u>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<u>관리선을</u> ----- ----- <u>자가 제2항에 따라</u> -----

어선이나 「수산업법」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「수산업법」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, 기관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,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

-----.

⑤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사용하는 양식업권자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장(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을 말한다) 외의-----

-----.

-----.

⑥ -----제4항까지에-----

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다
만, 수산자원의 증식·보호와
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
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
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
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
항을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
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(서울
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
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
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할 수
있다.

제52조(준용규정) 허가에 관하여
는 제13조제2항, 제16조, 제18
조제1항·제3항, 제19조, 제20
조, 제21조제1항·제3항, 제22
조, 제23조, 제26조, 제35조, 제
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
까지(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
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면허”는
“허가”로, “한정양식업면허”는
“한정양식업허가”로, “면허기
간”은 “허가기간”으로, “양식업
권자”는 “허가양식업자”로, “양

-----.

-----.

제52조(준용규정) -----

-----제4
1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부터
제6항까지-----

-----.

식업권을 취득한 날”은 “양식 허가를 받은 날”로, “양식업권의 행사”는 “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”으로 본다.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제41조제1항(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

6. 제41조제4항(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·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

7. ~ 9. (생략)

제79조(벌칙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41조제2항

6. 제41조제5항

-----해당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-----

7. ~ 9. (현행과 같음)